

#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48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7年 2月 21日(金) 13時42分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第48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
2.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
3. 橫溪都市基本計劃變更에따른平昌郡議會意見提示의件
4. 第48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_\_\_\_\_ 2 面
2. 第45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議長提議)\_\_\_\_\_ 2 面
3.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2 面
4. 橫溪都市基本計劃變更에따른平昌郡議會意見提示의件(平昌郡守提出)—— 5 面
5. 第48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7 面

(13時42分 開議)

○ 議長 李相燾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평창군의회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공무원정원조례개정, 횡계도시기본계획변경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안건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報告事項

(13時44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 議長 李相燾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第48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議長提議)

(13時46分)

○ 議長 李相燾 : 다음은 의사일정 제1

항 제4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2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參 照 >

· 議事日程

( 끝에 실음 )

3.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13時47分)

○ 議長 李相燾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姜慶錫 : 내무과장 강경석입니다.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환경기초시설 관리 인력이 평창읍과 미탄면 쓰레기 소각시설, 미탄면 오수처리장에 기능인력의 정원 승인에 따른 읍·면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창읍에 쓰레기 소각시설 관리 기능인력 지방기능직 8등급 난방원 1인을 순수 중원하고 미탄면에 쓰레기소각시설 및 오수처리장 시설 관리인력인 지방기능직 8등급 전기원 1명을 순수 중원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參 照 >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

.....

○ 議長 李相燾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 參 照 >

. 검토보고

( 끝에실음 )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의원 간담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측구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도암지역 오수처리장 기능인력이 군에 배치되어 있는데 면으로 관리 이양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內務課長 姜慶錫 : 네. 진부,도암, 평창등 3개소는 94년도 이전에 군으로 정원승인이 되어 있어서 제가 관련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읍면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李相燾 : 다음 이경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이경진 의원입니다. 기능직 8등급 한사람 증원하는데 기술직으로 증원하시는 겁니까?

○ 內務課長 姜慶錫 : 네.

○ 李慶鎭 議員 : 소각로를 완전하게 가동 하실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까?

소각로를 올 겨울에 보니까 3~4일에 한번씩 고장이 난 상태로 가동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숫자만 채우는 그런 증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 內務課長 姜慶錫 : 지금 난방원이나

전기공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은 자격증을 가진자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직 같은것도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난방원은 평창소각시설은 기능자격증을 가진자로 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慶鎭 議員 : 실지 가동이 평창군 뿐만 아니라 소각로가 있는곳은 다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사람이라도 사실 언제라도 나가면 가동을 시킬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연마된 직원이 선택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 內務課長 姜慶錫 : 네.

○ 李慶鎭 議員 : 이상입니다.

○ 議長 李相燾 :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橫溪都市基本計劃變更에따른平昌郡議會意見提示의件(平昌郡守提出)

(13時52分)

○ 議長 李相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橫계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회 의견서의의견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는다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橫계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金學根 : 도시과장 김학근입니다.

橫계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평창군의회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건설부로 부터 승인되어 평창군 제22호 88년 3월 26일로 고시

된 橫계도시기본계획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균형 개발을 유도하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橫계5리 문화마을조성 예정지구와 차항리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2항 규정에 의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간적 범위로서 계획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20년 계획으로 계획목표 인구는 2만1천명으로 계획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로서는 당초구역 6.51㎢를 0.087㎢로 확장 구획하여 총 6.597㎢로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參 照 >

· 橫溪都市基本計劃變更에따른議會意見聽取案

( 부록에 실음 )  
.....

○ 議長 李相燾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參 照 >

. 검토보고

( 끝에실음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樂雲 議員 : 김낙운 의원입니다.

지금 황계도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설명을 잘 청취를 했는데 황계지역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98년 월드컵스키대회, 99년도 동계아시아대회, 또 장기적으로는 2006년도 동계올림픽 까지도 염두에 두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계지역에 대한 상업지역의 면적이 너무 작게 계획이 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비를 보면 100분의 4%만 상업지역으

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감안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좀더 확대 지정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비율은 상업지역을 몇%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 都市課長 金學根 : 총면적의 10% 범위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樂雲 議員 : 그러면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한것이 4% 인니까, 아니면 면적을 조정을 했습니까?

○ 都市課長 金學根 : 확대 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족을 하고도 저희가 여유를 둔겁니다.

○ 金樂雲 議員 : 알겠습니다.

○ 議長 李相燾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황계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충

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사전 의원간 합의한 대로 평창군이 제출  
 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다는  
 찬성의견을 채택,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 없음을 선포합니  
 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이 모두 마무  
 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  
 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01分 閉會)

5. 第48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  
 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時00分)

○ 議長 李相薰 : 의사일정 제4항 제48  
 회 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특서명의원선출  
 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김두경 의원과 우강호 의원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 出席議員

- |     |       |
|-----|-------|
| 議 長 | 李 相 薰 |
| 副議長 | 金 鍾 永 |
| 議 員 | 李 慶 鎮 |
| 議 員 | 劉 燾 文 |
| 議 員 | 李 洙 現 |
| 議 員 | 金 斗 經 |
| 議 員 | 金 樂 雲 |
| 議 員 | 禹 康 鎬 |

○ 出席公務員

- |       |       |
|-------|-------|
| 郡 守   | 金 容 郁 |
| 副 郡 守 | 朴 容 康 |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企劃監查室長	金 榮 柱
民願奉仕室長	李 永 德
內 務 課 長	姜 慶 錫
財 務 課 長	申 大 松
地域開發課長	宋 在 明
觀光文化課長	權 赫 昇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福 祉 課 長	朴 靜 子
環境保護課長	趙 圭 植
畜 産 課 長	鄭 義 秀
山 林 課 長	孫 榮 澤
建 設 課 長	安 元 守
保健事業課長	孫 東 欽
社會指導課長	李 宇 炯
技術普及課長	韓 用 球

○ 議會事務課

事 務 課 長	李 京 植
專 門 委 員	辛 敎 善
議 事 係 長	全 完 鐸
地方行政主事補	李 錠 均
地方行政主事補	鄭 成 文

【 議 席 】

○ 議席表 ( 13面に 실음 )

.....

【 報 告 事 項 】

○ 제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97. 1. 27)

· 횡계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평창군의회건의청취안('97. 2. 12)

○ 문서발송

·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장수조례안('97. 1. 13 - 평창군이송)

○ 일반문서접수

· 무장공비침투관련융자금지원현황에관한서면질문서('97. 1. 29)

· 대화양돈단지사업관련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미승인처분취소청구에대한서면질문서('97. 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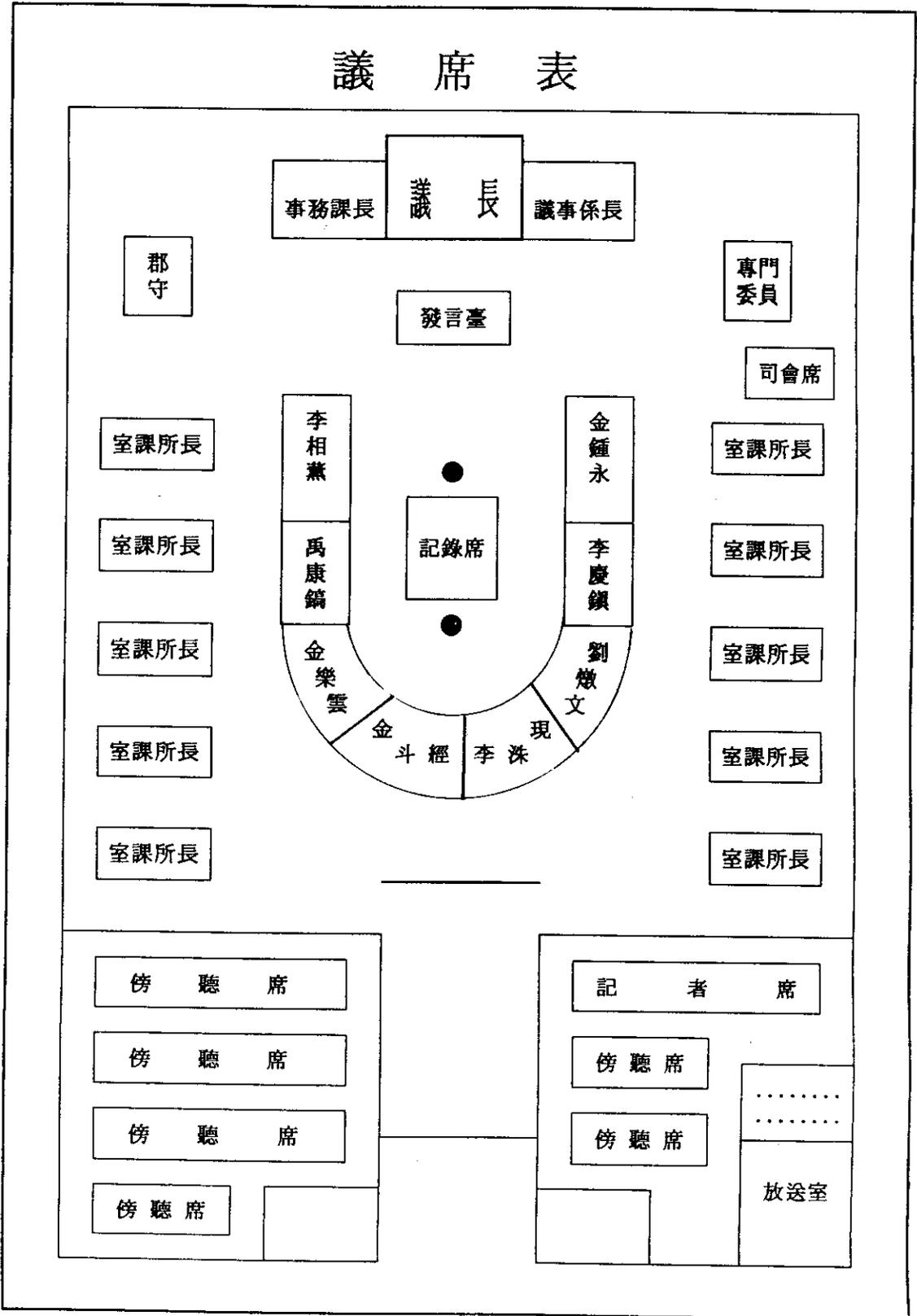
( 이상2건 - 이수현의원 )

○ 민원접수

. 간이상수도보수를바라는진정서

( '97. 1. 27 - 평창읍 대상리 이진  
원의 32인 )

# 議 席 表



# 의 사 일 정

○ 제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1997년 2월 21일(1일간)

일 자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97.2.21 (금)	(13:00)	○ 개 회 식	
	제1차본회의 (13: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 결정의건</li> <li>2.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li> <li>3. 횡계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평창군의회 의견제시의건</li> <li>4. 제4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li> </ol>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1. 27. 평창군수(내무과장)
- 나. 회부일자 : 1997. 2. 15
- 다. 상정일자 : 1997. 2. 21 제48회평창군의회(임시회)  
제 1차본회의

## 2. 제 안 이 유

- 환경기초시설(평창읍·미탄면 쓰레기소각시설, 미탄면 오수처리장)기능인력의 정원 승인에 따른 읍·면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임.

## 3. 주 요 골 자

- 가. 평창읍에 쓰레기소각시설 관리 기능인력 [ 지방기능직 8등급(난방원) ] 1인 순수증원
- 나. 미탄면에 쓰레기소각시설 및 오수처리장 시설관리 기능인력 [ 지방기능직 8등급(전기원) ] 2인 순수증원

## 4. 검 토 의 견

- 강원도로 부터 '96. 12. 24(자치 12200-1870)일에 정원승인이 난 사항이며,
- 현재 지역적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생활쓰레기 및 생활오수처리시설물이 완공되어 있는 가운데 이의 시설물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횡계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2. 10. 평창군수(도시과장)
- 나. 회부일자 : 1997. 2. 15
- 다. 상정일자 : 1997. 2. 21 제48회평창군의회(임시회)  
제 1차본회의
- 라. 관계법령 :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2항

### 2. 제 안 이 유

- 1987년 11월 29일 건설부로 부터 승인되어 평창군 제22호 (88.3.26)로 고시된 횡계도시기본계획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균형 개발을 유도하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횡계5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정 지구와 차항리 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재정비 하기 위함.

### 3. 주 요 골 자

#### 가. 용도지역 변경

- 1) 주거지역 확대 : 당초 914,000m<sup>2</sup> ⇒ 1,331,000m<sup>2</sup>
- 2) 상업지역 확대 : 당초 200,000m<sup>2</sup> ⇒ 244,000m<sup>2</sup>
- 3) 공업지역 축소 : 당초 35,000m<sup>2</sup> ⇒ 없 음
- 4) 녹지지역 축소 : 당초 5,361,000m<sup>2</sup> ⇒ 5,022,000m<sup>2</sup>

## 나. 도로계획

### 1) 광역교통

- 고속도로(B=40m) : 영동고속도로 4차선 및 선형변경
- 지역간 도로(B=25m)
  - 진부 ~ 강릉간 지방도 456호가 중심시가지를 동서로 연결하여 간선도로 담당

### 2) 도시내 교통

- 주간선도로(B=20m)
  - 도시내 교통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종·횡축 도로망 체계구성
- 보조간선도로(B=12~15m)
  - 주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하는 도로망 형성

## 다. 공원지역 변경

- 1) 도시공원 : 7개소 1,039,000㎡ ⇒ 3개소 649,000㎡
- 2) 완충녹지 : 1개소 196,500㎡ ⇒ 1개소 196,000㎡
- 3) 경관녹지 : 1개소 10,300㎡ ⇒ 없 음

## 4. 검토 의견

- 횡계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횡계5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와 차항리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재정비하고 지구별 용도면적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재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주민공청회('96.12.19)를 실시한 것임.
- 주민공청회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기 전에 본 의회의 의견을 듣기위한 사전 절차임.

- 위의 사항은 관계법령 절차에 의거 제안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지구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용도지구 측면〉

- 고원관광도시의 부각으로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의 보완 및 확대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 〈교통망지구 측면〉

- 광역교통 및 도시내 교통망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도로폭이나 길이는 변동이 없으나 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로 및 도시내 교통소통 원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등으로 선형변경이 이루어 진것으로 현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 됨.

#### 〈공원지구 측면〉

- 공원녹지는 총 9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 되었으며, 면적 또한 400,800㎡가 감소 되었으나 이는 시가지내 분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공원녹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생활권 계획과 부합되는 도시공원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 됨.

⇒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황계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